

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
발의자 : 강명구 · 서천호 · 엄태영

김정재 · 이성권 · 임종득

구자근 · 이종배 · 임이자

김용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· 처리위탁 · 보관(이하 “이전”이라 함)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·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

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28조의8제6항,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).

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8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에서”를 “제6항까지에서”로 한다.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,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9제1항제1호 중 “제28조의8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을”을 “제28조의8제1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6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28조의8제6항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

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제28조의8제6항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

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)</p> <p>① ~ ⑤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,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-----제6항까지에서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28조의9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)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</p>	<p>제28조의9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
1. ~ 1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~ 14. (현행과 같음) <u>14의2. 제28조의8제6항(제26조</u> <u>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</u> <u>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<u>을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명</u> <u>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자</u>
15. ~ 27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15. ~ 2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